

# **윤리규범**

**주식회사 알루코**

# 목 차

제 1 장	총칙 -----	2
제 2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2
제 3 장	고객에 대한 자세 -----	3
제 4 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3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3
제 6 장	사회에 대한 책임 -----	4
제 7 장	인권존중 및 보호 -----	4
제 8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5
제 9 장	부칙 -----	7

## 제 1 장 총 칙

### 1. 목적

- ① 본 윤리규범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알루코 임직원은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 2. 적용범위

- ① 본 윤리규범은 모든 임직원들(회사내에 근무하는 계약직, 용역직등을 포함) 적용된다.
- ②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 3. 주주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4. 평등한 대우

-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5. 적극적 정보제공

-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

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고객에 대한 자세

### 6. 고객존중

- ①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제4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7.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8.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9.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10. 근무환경 및 안전관리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전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제6장 사회에 대한 책임

#### 1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1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①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13. 환경보호

- ①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7장 인권 존중 및 보호

#### 14. 인권 존중

- ① 회사와 임직원은 내부 구성원은 물론 협력회사,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이에 바탕을 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 15. 인권 보호 및 존중의무

- ①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

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어떠한 형태이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나. 인종 · 국적 · 성별 · 학별 · 종교 · 연령 · 장애 · 출생지 · 결혼 여부 ·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다.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라.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와 사업 파트너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16.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17. 이해상충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18. 내부정보이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19.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20.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 ①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②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2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 22. 정치관여 금지

-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3.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24. 윤리규범의 준수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25.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 및 처리

- ①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발견한 임직원은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

가. 감사실앞 설명 또는 익명 신고 :

전화 : 02-2103-3009, FAX : 02-2103-300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4층

나. 그룹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다. 회사 경영지원실장앞 신고

- ② 윤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윤리 경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장 부칙

### 1. 시행 시기

본 윤리규범은 2022년 07월 01일부로 시행한다.